

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서초구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재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9일

서 초 구 청 장

1. 허가구역 재지정 개요

가. 대상구역 : 자연녹지지역 일대

나. 지정기간 : 2026. 5. 31. ~ 2027. 5. 30. (1년간)

다. 지정범위 : 종전과 동일(변동 없음)

라. 대상 지역 및 면적 : 총 21.34km²

· 내곡동, 신원동, 염곡동, 원지동, 우면동, 방배동, 서초동, 양재동 일원

2.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 m ² 초과
	상업지역	15 m ² 초과
	공업지역	15 m ² 초과
	녹지지역	20 m ²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 m ² 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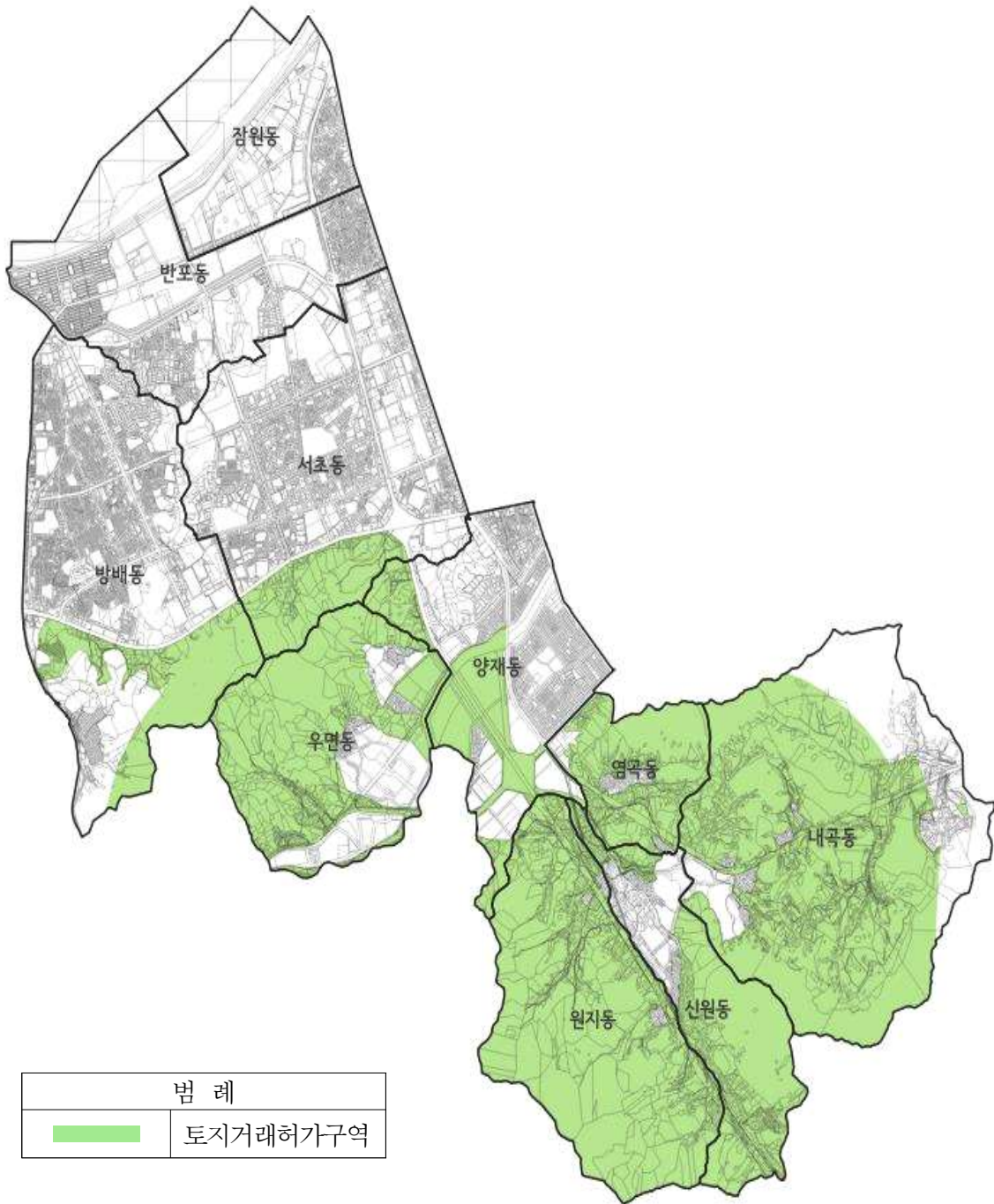
3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열람

- 확인방법 : 서울부동산정보광장(land.seoul.go.kr)→[기타정보]→[토지거래허가]→[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시)]

※ 유의사항 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 정정 내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최종적인 구역 포함 여부는 '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'을 기준으로 함.

4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확인

- 확인방법 : 세부 지형도면 및 관련 정보는 토지e음(www.eum.go.kr) 또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, 상세 도면은 별도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양재동(1.26km²), 우면동(2.98km²), 방배동(1.35km²), 내곡동(6.20km²), 신원동(2.12km²),
 염곡동(1.45km²), 원지동(5.06km²), 서초동(0.92km²),